

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662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29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-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·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 삭제(안 제5조제2항)
-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기준 완화(안 제6조)
- 공단 입주업체 자격 완화(안 제15조제1항)
-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삭제(안 제22조제1항, 제2항)
- 환매권 유보 조항 삭제(안 제23조)
-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비용부담 조항 삭제(안 제2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규제 완화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제 호

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공업단지”를 “산업단지”로 한다.

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8조, 제3장제명, 제9조, 제11조제3항, 제15조제1항및제1호, 제18조제3항, 제20조, 제27조, 제29조중 “공업” 을 “산업” 으로하고 제4조, 제7조제2항, 제8조, 제15조제1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, 제26조중 “공단을 “산업단지” 로한다. 제4조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군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”를 “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“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22조, 제23조, 제25조제2항및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고성군 <u>공업</u> 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	제명 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<u>공업</u>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 의 <u>공업</u> 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-- <u>산업</u> ----- -- <u>산업</u> ----- -----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 <u>공업</u> 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의거 군내 <u>공업</u> 단지에 적용하며,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<u>공업</u> 단지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----- -- <u>산업</u> 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
제3조(용어의정의) <생략>	제3조(용어의정의)<현행과같음>
1.“조성사업”이라 함은 <u>공업</u> 단지내의 용지의매입,정지,가로개설,진입도로, 공업용수,상하수시설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,통신,환경시설등의 사업 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 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	1.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“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사업에 의하 여 조성된 <u>공업</u> 용지및공공용지를 말 한다.	2.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 ---
3.“분양지”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.	3. <현행과 같음>
4.“공장”이라 함은 일단의 <u>공업</u> 용지 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 장을 말한다.	4.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5.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용수로,도로, 하수로,교량,통신,동력시설등 <u>공업용지로서의</u> ---<이하생략> 제4조(사업의시행자) <u>공단조성사업은</u>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이</u> 직접시행한다.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 닌 제3자가 위탁시행 할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<u>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장이</u> 직접 행한다.	5.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<이하생략> 제4조(사업의시행) <u>산업단지</u> ----- <u>군수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수가</u> ----- -----
제5조(토지등의 매입)①<생략> ② <u>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이전 및 철</u> <u>거 예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</u> <u>가 행한다.</u> ③<생략>	제5조(토지등의 매입)①<현행과같음> ②<삭제> ③<현행과같음>
제6조(사업비의결정및부담)조성사업비 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 여 <u>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바에 따</u> <u>라 입주자가 부담한다.</u> 1~4<생략>	제6조(사업비의 결정및부담)----- ----- --- <u>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</u> <u>의 결정에 따른다.</u> 1~4<현행과같음>
제7조(사업비의확보)①<생략> ②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<u>공단</u> 조성으로 인하여---<이하생략> ③<생략>	제7조(사업비의확보)①<현행과같음> ②----- <u>산업단지</u> ----- ③<현행과같음>
제8조(조성토지등의 사용)군수는 <u>공단</u>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 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.다만,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 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	제8조(조성토지등의 사용)--- <u>산업단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군수는 군내 <u>공업</u>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수 있다.	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 -----
제3장 <u>공업</u> 단지심의위원회 제9조(설치) <u>공업</u> 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<u>공업</u> 단지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	제3장 <u>산업</u> 제9조(설치) <u>산업</u> 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
제11조(구성)①<생략> ②<생략> ③위원은-- <u>공업</u> 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--<이하생략>	제11조(구성)①<현행과같음> ②<현행과같음> ③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
제15조(입주자격)① <u>공단</u> 에 입주할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 다만---<이하생략> 1. 당해 <u>공업</u> 단지의 입주허용 업체일 것	제15조(입주자격)① <u>산업단지</u> ----- ----- 1.----- <u>산업</u> ----- --
2. 제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.<생략>	2.<삭제> 3.<현행과같음>
제18조(분양계약)①<생략> ②<생략> ③분양계약을 체결한자는 <u>공업</u> 단지 관리 기관과 입주----<이하생략>	제18조(분양계약)①<현행과같음> ②<현행과같음> ③----- <u>산업</u> ----- -----
제20조(분양대금의 납입) 조성지의 분양 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공업</u> 용지조성사업---<이하생략>	제20조(분양대금의 납입) ----- ----- <u>산업</u> -----
제22조(양도와 대여금지) ①분양을 받은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	제22조(양도와 대여금지)<삭제>

현 행	현 행
<p><u>또는 대여할수 없다.</u></p> <p><u>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3조(환경권의 유보)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2.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자연시키는 경우</u></p> <p><u>3. 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</u></p> <p><u>제24조(소유권이전)①군수는 <u>공단</u>조성이 완료되면----<이하생략></u></p> <p><u>②<생략></u></p> <p><u>제25조(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)</u></p> <p><u>①군수는 <u>공단</u>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---<이하생략></u></p> <p><u>②<생략></u></p> <p><u>③<생략></u></p> <p><u>④<생략></u></p> <p><u>제26조(타법령의 적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도시계획법,건축법,조세감면규제법,지방재정법,토지수용법등 <u>공단</u>조성 및 ---<이하생략></u></p>	<p><u>제23조(환경권의 유보)<삭제></u></p> <p><u>제24조(소유권이전)①---<u>산업단지</u>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②<현행과같음></u></p> <p><u>제25조(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)</u></p> <p><u>①---<u>산업단지</u>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②<현행과같음></u></p> <p><u>③<현행과같음></u></p> <p><u>④<현행과같음></u></p> <p><u>제26조(타법령의 적용)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u>산업단지</u>-----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특별회계의설치)군수는 <u>공업단지</u>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<u>공업단지특별회계</u>를 설치할수 있다.</p>	<p>제27조(특별회계의설치)---<u>산업</u>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산업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9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<u>공업단지</u>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9조(경과조치)-----</p> <p>-----<u>산업</u>-----</p> <p>-----</p>